

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- 사업대상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난임부부
- 사업내용 : 시술비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의 90%,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(30만원), 착상유지(20만원), 유산방지(20만원) 지원
 - 총21회 지원[체외수정 16회,(신선배아 9, 동결배아 7), 인공수정 5회]
- 지원금액 : 시술종류·연령별 차등 지원
 - 건강보험 본인부담 30%(만45세이상 50%)

적용대상 (여성기준)		44세이하	45세이상
체외 수정	신선배아	9회	110만원
	동결배아	7회	50만원

적용대상 (여성기준)		44세이하	45세이상
인공수정	5회	30만원	20만원

- 지원절차 : 지원신청→자격조사→대상자 선정(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발급)
→난임시술→시술비 청구(의료기관 및 신청자)→지급(보건소)

붙임

보건복지부 지정 도내 시술기관 현황(2022년 12월 기준)

○ 체외수정 시술기관 : 6개소(창원 3개소, 진주 2개소, 김해 1개소)

연번	지정번호	기관명	소재지	대표자	지정일자	의료기관 종류
1	54	가야자모의원	진주시 주악동	문진수	2005-04-21	의원
2	69	경상국립대학교병원	진주시 칠암동	윤철호	2005-04-21	상급종합병원
3	70	엘르메디 산부인과의원	창원시 의창구	조재동	2005-04-22	의원
4	91-1	창원한마음병원	창원시 의창구	하충식	2005-05-19	종합병원
5	180	우리여성병원	김해시 내동	양승홍	2013-07-31	병원
6	237	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	창원시 성산구	윤철호	2020-07-13	종합병원

○ 인공수정 시술 의료기관 : 17개소(창원 6, 진주 5, 거제 1, 김해 3, 양산 2)

연번	지정번호	기관명	소재지	대표자 (기관장)	지정일자	의료기관 종류
1	2010-10	진주미래여성병원	진주시 강남동	신순철 외 3인	2010. 1. 5.	병원
2	2010-12	엘르메디산부인과의원	창원시 의창구	조재동	2010. 1. 5.	의원
3	2010-83	경상국립대학교병원	진주시 칠암동	신희석	2010. 1. 8.	상급종합병원
4	2010-90	가야자모의원	진주시 주악동	문진수	2010. 1. 8.	의원
5	2010-98	미래산부인과의원	창원시 마산합포구	김인재 외 1명	2010.01.08.	의원
6	2010-125	오즈산부인과의원	김해시 대청동	황태영	2010.01.15	의원
7	2010-131	창원한마음병원	창원시 의창구	하충식	2010.01.15	종합병원
8	2010-230	하나산부인과의원	창원시 마산회원구	김태우	2010.01.22	의원
9	2010-289	참여성병원	창원시 마산합포구	이윤식	2010.02.18	병원
10	2010-299	미즈모아산부인과	양산시 중부동	남철	2010.03.05	의원
11	2011-23	참조은산부인과의원	진주시 신안동	박은희	2011.12.01	의원
12	2013-10	우리여성병원	김해시 내동	양승홍	2013.07.04.	병원
13	2013-19	미즈맘여성의원	거제시 거제중앙로	강태길	2013.11.12.	의원
14	2015-8	미즈여성의원	진주시 순환로	한경안	2015.06.01	의원
15	2016-4	에텔여성의원	양산시 물금읍	주장오	2016.06.01	의원
16	2017-3	장유산부인과의원	김해시 대청동	박대진 외 2명	2017.02.22	의원
17	2020-6	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	창원시 성주동	윤철호	2020. 7.13.	종합병원

*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인구정책 인구출산 정부체외수정 시술지정기관 현황 1, 7월 공표

2.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

- 사업대상 :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
 -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19세까지(소득재산 기준 없음)
- 사업내용
 - 임신부가 임신·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
 - ※ 조산원 포함, 한방의료기관(한의원, 한방병원)에서는 임신오저(O21 임신중 과다구토), 태기 불안(O20 초기 임신중 출혈, O60.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), 산후풍(U32.7) 상병에 대한 진료 및 한약 처방 조제지원(2020년부터 가능)
 -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모든 요양기관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·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
- 지원금액 :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
- 지원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
- 서비스 기간 : 카드 수령후부터(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)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
 - ※ 서비스 이용 도중 유사산 시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 1566-3232(단축4번)로 사용변경 신고(바우처는 유·사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)
- 신청권자 :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

3.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
○ 사업대상 :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로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받은 임산부

○ 사업내용 : 19종 질환을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(상급병실료 차액, 환자 특식 제외)에 해당하는 금액의 90% 지원(10%는 개인 부담 적용)

※ 의료급여수급자는 100% 지원

※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종류

①조기진통, ②분만관련 출혈, ③중증 임신중독증, ④양막의 조기파열, ⑤태반의 조기 분리
⑥절박유산, ⑦자궁경부무력증, ⑧분만 전 출혈, ⑨전치태반, ⑩양수과다증, ⑪양수과소증
⑫고혈압, ⑬다태임신, ⑭당뇨병, ⑮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⑯신질환, ⑰심부전, ⑱자궁내 성장제한, ⑲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

- 포함 대상 :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
- 지원 제외자 :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

○ 지원원칙

-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·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우선순위가 높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심으로 지원
-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진료비 위주 지원

○ 지원한도 : 1인당 300만원(2개 이상 진단시에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)

○ 지급방법 : 시·군 보건소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조치

○ 신청기간 :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(출산 이후 1회 한해 지원 원칙)

- 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

4.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

- 사업대상 : 보건소에 등록,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
- 사업내용 :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, 영아 발달상담, 양육교육, 정서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참고1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개요

□ 서비스 내용

- (사업 대상)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
- (서비스 내용)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, 영아 발달상담, 양육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
 - 간호사(2~5명)와 사회복지사(1명)으로 구성된 전담팀*을 구성
 - * 기존 보건소 인력 활용 가능하나, 전문인력 교육과정 이수 필수 및 전담인력으로 발령 조치(겸직 불가, 기간제 근로자 제외)
 - 보건소 방문 임산부 평가로 일반군과 고위험군(지속방문군)으로 분류
 -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, 우울 등 심리상태, 흡연·음주, 양육환경 등 조사

- (기본방문)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을 통한 산후 우울 평가 등 기본 건강관리 교육
 - 산모건강관리 및 정서적지지, 신생아 건강발달확인, 수유교육 등 상담 제공
 - 출산 후 방문을 통해 임산부 재평가, 문제 발견 시 지속방문군으로 재분류
- (지속방문) 고위험군 가정은 출산 전부터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상담·교육 제공(최소 25~29회)
 - 모자건강상담, 영아 발달 지원, 지역사회와 관계형성 등 지속적 사례관리
 - * 19세이하 산모, 한부모가족/조손가정,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계층 산모우울·불안 등
- (지역사회 연계) 위기상황 가구는 전문지원센터 등 연계 및 지속관리
 - 난임우울증상담센터, 정신건강증진센터,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, 가정폭력상담센터,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등

□ 운영체계

- (전담팀 구성) 보건소에 간호사(3~5명)와 사회복지사(1명)로 구성된 건강관리 전담팀 구성
 - ※ 연간 출생아 수 **200명당 간호사 1명 배치** 원칙. 다만, 출생아 수 300명 이하인 사군은 간호사 2명으로 운영 가능
 - (간호사) 산모와 영아 건강상담·정보제공, 양육역량 향상, 정서적지지 등 기본·지속방문가구 총괄 관리

- (사회복지사) 고위험 가구의 산모우울, 학대, 가정폭력 문제 등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및 각종 사회복지 연계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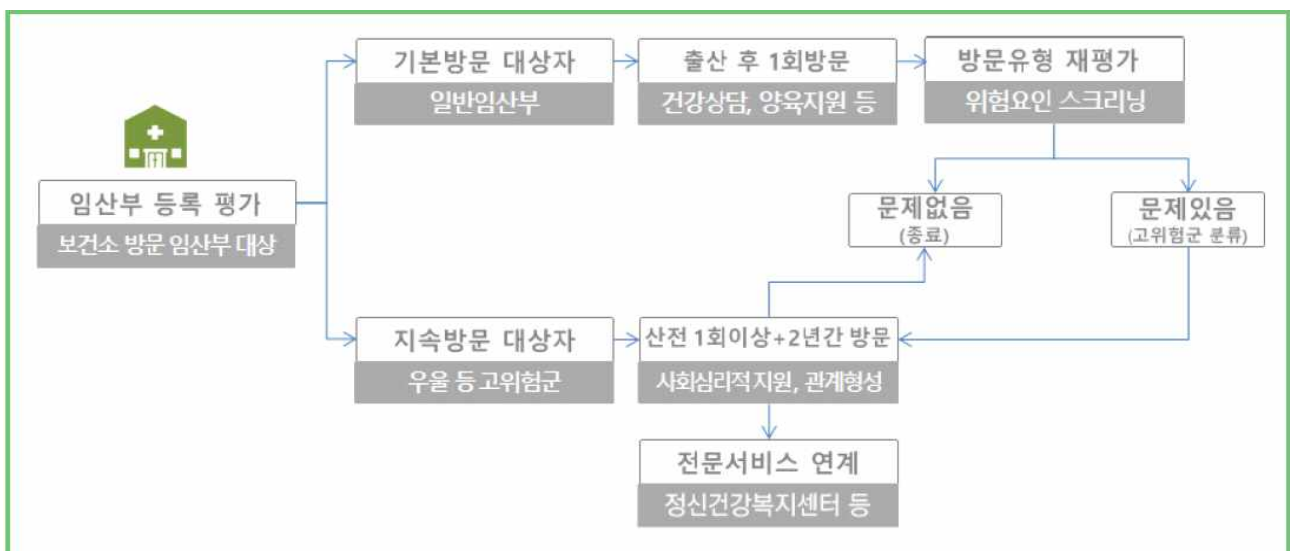
□ **전담 인력 교육 등 운영**

- 시군구에서 인력 직접 채용 후 사업지원단 교육 필수 이수
- 기초교육(160시간), 심화교육(160시간)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, 연간 단계별 현직훈련의 형태로 제공됨
 - (기초교육) 기본방문 및 지속방문 기초교육, 그룹활동, 실습(동행 방문 실습 포함) 및 평가
 - (심화교육) 가족파트너십 모델 훈련, 사례회의 및 주제별 심화교육

□ **기본방문 시기 및 내용(추가 기본방문 포함)**

구분	시기	서비스 내용
산전방문	▶ 임신 32주 이후부터 출산 이전	▶ 임신부 건강상태 확인 출산에 대한 산모의 준비 상태 확인, 태아와의 애착 확인 등
산후 1차방문	▶ 출산 후 8주 이내 시점	▶ 신생아 및 산모 건강사정, 산모 우울 검사, 사회 심리평가 실시, 가정폭력 예방교육 제공 등
산후 2차방문	▶ 1차 기본방문 후 2주경	▶ 아기 성장발달 확인, 아기 양육과 관련된 활동 해보기, 지역사회 자원 안내 등
산후 3차방문	▶ 아기 월령 4~6개월 시점	▶ 영아 건강사정, 수유와 수면, 구강관리, 이유식, 아기와 상호작용하기 등

□ **사업 서비스 프로세스**



5. 난임부부 시술비지원

- 사업대상 : 도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
- 사업내용 : 시술비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의 90%,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(30만원), 착상유지(20만원), 유산방지(20만원) 지원
 - 총21회 지원[체외수정 16회,(신선배아 9, 동결배아 7), 인공수정 5회]
- 지원금액 : 시술종류·연령별 차등 지원
 - 건강보험 본인부담 30%(만45세이상 50%)

적용대상 (여성기준)		44세이하	45세이상
체외 수정	신선배아	9회	110만원
	동결배아	7회	50만원

적용대상 (여성기준)		44세이하	45세이상
인공수정	5회	30만원	20만원

6.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

- 사업대상 : 도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
 -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
 - ※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.
- 사업내용 : 난임부부 대상 한약, 침, 뜸 등 지원(1인당 160만원)

7.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

- 사업내용 :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일부 지원(부부당 20만원 이내(1회))
- 지원대상 : 경남도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(사실혼 관계 포함)
 -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- 지원항목 : 기초검사, 호르몬검사, 난관(나팔관) 조영술, 정자검사 등
- 신청기관 : 부인 주소지 관할 시·군 보건소
- 검진기관 : 난임시술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진

8.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

- 사업대상 : 가임여성(결혼이민자 포함) 및 3개월 미만 임신부
 - ※ 4개 군 제외 :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 시 실시(의령, 산청, 함양), 자체 지원(고성군)
- 사업내용 : 풍진 항원, 항체검사 실시(검사단가 29,000원)
 - ※ 풍진이란 : 발진성의 급성 피부 전염병 풍진 바이러스에 의한 2급 법정 감염병으로 미열과 홍반성 구진, 림프절 비대를 특징으로 하는 급성 감염성 질환
- 검사방법 : 보건소 채혈 →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방문 수거 및 검사
- 검사기관 :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
- 시행주체 : 14개 시군(창원시, 진주시, 통영시, 사천시, 김해시, 밀양시, 거제시, 양산시, 함안군, 창녕군, 남해군, 하동군, 거창군, 합천군)

9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전환)

- 사업목적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사업대상 : 도내 출산가정
- 사업내용 :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
□ 서비스 신청절차

- 신청기간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신청장소 :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·군 보건소
- 신청자격 : 국내에 주민등록(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)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
- 지원기간 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이용자 선택(단축·표준·연장)에 따라 최소 5일~최대25일
- 지원내용 : 산모건강관리(영양관리, 체조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목욕, 수유지원 등), 산모 식사준비, 산모·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
-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*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)

□ 제공인력 교육기관

- 교육기관 : 7개소(5개시 : 창원(2), 진주(2), 통영(1), 김해(1), 양산(1))

교육기관명	소재지	대표자	전화번호	지정기간
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	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20번길 11	김은경	283-3220	2023.1.1.~ 2024.12.31. (2년간) (2022.12. 지정 통지)
참사랑 어머니회	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2	김현숙	286-3040	
진주YWCA	진주시 동진로 263번길 14	김성이	755-3463	
진주혁신요양보호사교육원	진주시 충의로 119 아슬란스포츠몰 D동 402호	심혜영	920-9297	
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	김해시 해반천로 168번길 10-16	이은주	331-4338	
샘물요양보호사교육원	통영시 무전8길 33. 301호 (로운빌딩)	안수진	641-0332	
맘스웰 양산	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62 (플러스타워) 3층 301호	윤진란	385-3375	

10. 첫만남 이용권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2022. 1. 1. 이후 출생신고된 영유아
- 사업내용 :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(일시금) 지급

□ 세부추진계획

- (신청권자)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
- (지원금액 및 방식) 출생아당 200만원(일시금) / 바우처(국민행복카드)
- (신청기간)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
- (신청방법)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, 복지포 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 온라인신청 등
- (지원기간) 바우처 지급일(결정 통지)로부터 1년까지 사용
- (사용처) 유흥업소·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
- 전달체계 및 흐름 : (읍면동) 신청·접수 → (시군구) 지원결정 → (사회보장정보원) 바우처 생성·관리 → (시군구) 대상자 관리



구분	주체	내용
이용권 신청	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(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)
접수 및 상담·조사	읍·면·동 (복지포 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서 접수 대상자 여부 확인(신청서, 보호자 등 지급요건 확인)
지원대상 결정	시·군·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
결과 통보	시·군·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시·군·구 → 신청인) 대상 판정 결과 통지 (행복e음 → 전자바우처) 대상 판정 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
카드 신청	서비스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여 '국민행복카드' 신청 * BC·삼성·롯데·KB국민·신한 카드사 '국민행복카드' 기소지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 카드 이용 가능
카드 발급 및 배송	전담금융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카드 발급 및 배송

11. 저소득층 기저귀 · 조제분유 지원

○ 사업대상

(기저귀)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해당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

지원대상		소득수준(참고)
기초생활보장	생계급여	기준중위소득 30% 이하
	의료급여	기준중위소득 40% 이하
	주거급여	기준중위소득 43% 이하
	교육급여	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차상위계층	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	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	차상위자활	
	차상위장애인	
	차상위계층확인	
한부모가족(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)		기준중위소득 60% 이하(기준중위소득 72% 이하)
(20년 추가) 장애인 부모 또는 장애인 영아가구, 다자녀(2인이상)		기준중위소득 80%이하

(조제분유)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사유에 해당 시 지원

- 아동복지시설 · 공동생활가정 · 가정위탁보호 · 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 (부자 · 조손)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
- 산모의 사망 ·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
 - * 에이즈, HTLV감염(인간T세포백혈병바이러스),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, 악성신생물, 유방의 악성신생물,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,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,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
-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, 의식불명,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, 상반신 마비, 장기간(1개월 이상) 입원 치료, 희귀 · 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
- 산모의 유방절제술 · 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, 질환으로 지속적 약물 복용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(20년 추가)

○ 사업내용 : 기저귀 월 80천원, 조제분유 월 100천원, 기저귀·조제분유 월 180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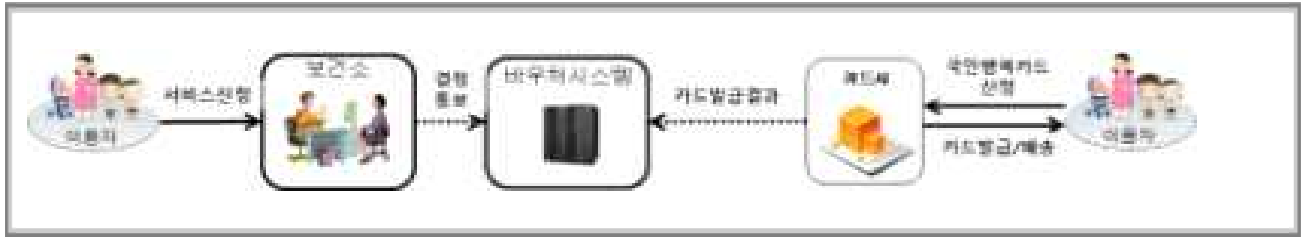
○ 신청방법 : 주민센터* 및 보건소 신청 * 출생 신고 연계 가능

○ 신청기한 :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 시 지원

-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

- 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신청 시 1개월 치 지원

○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 절차



12.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○ 사업대상 :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및 다자녀 가구(2자녀이상 소득무관)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

○ 사업내용 :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

- 미숙아 :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이 2.5kg 미만(300~1000만원)
- 선천성이상아 : 선천성 이상(질병코드 Q)으로 진단받고 사망 우려가 있거나,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(500만원)

<p>▶ 미숙아 : 출생체중 2.5kg미만이거나 임신기간 37주미만의 출생아 ※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(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)</p> <p>▶ 선천성 이상아 :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 신생아기(생후 28일 이내)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출생아</p>
--

※ 선천성이상을 가진 미숙아는 중복지원 가능.

○ 지원절차 : 퇴원일로부터 6개월 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 신청

※ 의료비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**의료비 지원내용 의무고지 제도 신설**('20. 10. 1부터)

-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생 보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(이송 받은 경우에는 2주) 이내에 의료비 지원내용을 우편 또는 SMS로 안내

○ 주요내용 : 체중별 의료비 차등 지원

미숙아 출생 시 체중	2.5kg 미만~2.0kg, 재태기간 37주 미만	1.5kg~2.0kg미만	1kg~1.5kg 미만	1kg 미만
1인당 최고지원액	3백만원	4백만원	7백만원	10백만원
선천성이상아	5백만원			
동반 최고금액	8백만원	9백만원	12백만원	15백만원

13.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

- 사업대상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 소득무관
- 사업내용 : 선별검사, 확진검사, 환아관리비 지원
 - 선별검사 :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,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(20~50천원)
 - 확진검사 :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(환아 확진된 경우만 지급 - 7만원)
 - 환아관리 : 선천성대사이상아로 확진된 환아(만19세 미만)의 특수식이 또는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 환아 의료비(연 25만원) 지원

▶ **선천성 대사이상 질환** : 선천적으로 음식물 등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가 부족하여 몸에 유해한 중간산물이 뇌 또는 장기에 축적되어 정신지체 등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

- 청구방법
 - 선별 및 확진검사비 : 검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생아 관할 보건소 신청 (출생일 기준 1년 이내)
 - 환아 특수식이 : 보건소 등록 후 매분기별 1회 보건소 신청→보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신청→ 인구보건복지협회 환아 가정으로 배송 →보건소 검수확인 후 지급
 -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 환아 의료비 지원 : 보건소 등록 후 시점 기준으로 1년 내 발생한 영수증으로 보건소 청구(연 250천원)

참 고

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종류 및 지원내용

구분	선천성대사이상	희귀질환 등 기타 질환
질환명	고전적 페닐케톤뇨증, 타이로신혈증, 단풍시럽뇨병, 메틸말론산혈증/프로피온산혈증, 이소발레린산혈증, 지방산대사장애, 호모시스틴뇨, 요소회로대사장애(아르지닌혈증, 시트룰린혈증 등), 글루타르산뇨, 고글라이신혈증, 갈락토스혈증, 고칼슘혈증	크론병, 단장증후군, 담도폐쇄증, 장림프관확장증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식이(갑상선기능저하증 외 지원) · 특수조제분유는 환자의 특성 및 개인별 섭취량 차이 등을 고려, 의사의 진단 및 소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추가지원 (월간 필요량의 최대 50%) 가능 · 저단백햇반(추가지원 없음) - 의료비 지원(갑상선기능저하증 지원) · 급여 비급여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가능(연25만원한도) ·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(환아 등록 전 발생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조제분유 · (크론병) 최초 신청시 집중치료기간 8주 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% 지원 *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명시된 1일 필요량('포' 명시) · 집중치료기간(8주) 경과 후 특수조제 분유 필요시 1일 1포(월간 30포) 지원원칙 (단장증후군, 담도폐쇄증, 장림프관확장증) 월간 필요량의 50%지원
신청기간	(1차) 1.1~1.10. (2차) 4.1~4.10. (3차) 7.1~7.10. (4차) 10.1~10.10. ※ 단 신규 환아는 예외 적용 가능	
수령시기	특수조제분유 보건소에서 신청 후 7일 이내 - 저단백햇반 (1차) 2월말, (2차) 5월말, (3차) 8월말, (4차) 11월말	

※ 19세 이상 환아: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되어 지원 가능
(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)

14.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

- 사업대상 :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 소득무관
- 사업내용 : 신생아 선천성 난청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 및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난청아(40~59db) 보청기 지원

▶ 신생아 1,000명당 1~3명 선천성 난청 발생(원인불명 50%정도)
 - 난청 정도 : 경도 26~40db, 중등도 41~55db, 중등고등난청 56~70db, 고도난청 71~90db, 농(심도 난청) 91db
 ※ 대개 40db 이상의 청력손실 시 언어소통에 장애, 양측 60db 이상 손실 시 청력장애자 등록

- 선별검사 :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(5~25천 원)
 ※ 검사종류 :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,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
- 확진검사 :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 (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)를 받은 경우(70천 원 내)
- 보청기 지원 : 신생아 청력검사 결과 40~59db 경우 보청기(양측 (1대 131만원)) 지원
 ※ 난청 검사기관

확진검사 가능 기관 (4개 기관)	창원2(창원 경상대학교병원,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) 진주1(경상대학교병원), 양산1(양산부산대학교병원)
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(4개 기관)	창원2(창원 경상대학교병원,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) 진주1(경상대학교병원), 양산1(양산부산대학교병원)

- 검사시기 : 출생 후 2~3일 이내 실시 권장, 늦어도 28일 이내 실시, 6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함 ※ 출생 후 28일 이내 만 건강보험 적용
 ※ 출생 6개월 이내 재활치료(보청기 착용, 인공와우이식 등 포함) 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언어·사회성 발달 가능성 매우 높아짐
- 지원방법
 - 검사비 :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 - 보청기 :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후 보건소에 지원금 신청→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심사 요청→지원대상 결정 통보→대학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→1개월 후 해당 대학병원 검수확인증 발급 받아 보건소 신청

15.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

○ 사업대상 :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
 (생후 14일, 4개월, 9개월,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, 66개월)

○ 검진항목

- 주요 선별 목표질환 : 성장·발달 이상, 비만, 안전사고, 영아돌연사 증후군, 청각·시각 이상, 치아우식증 등
- 5개 분야(계측, 측정, 문진, 진찰, 교육) 24개 항목 검진, 상담 실시
 -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·신체계측 공통 실시
 - 발달평가 및 상담(1, 2차 제외)과 9종의 건강교육으로 구성

○ 검진횟수 : 총 12회(일반검진 8회, 구강검진 4회)

구분	검진주기		
	일 반	구 강	
1차	생후 14~35일	-	
2차	생후 4~6개월	-	
3차	생후 9~12개월	-	
4차	생후 18~24개월	생후 18~29개월	
5차	생후 30~36개월	생후 30~41개월	
6차	생후 42~48개월	생후 42~53개월	
7차	생후 54~60개월	생후 54~65개월	
8차	생후 66~71개월	-	

16.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

- 사업대상 :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% 이하
 -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(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:K-DST)에서 '심화평가 권고'로 평가된 대상

<영유아 건강검진 개요>

- 3차(9~12개월)부터 8차(66~71개월)까지 "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(K-DST)"도구를 이용하여 발달선별평가를 실시함.
- 발달선별평가는 6개 핵심발달 영역(대근육운동, 소근육운동, 인지, 언어, 사회성, 자조)으로 구분되며, "양호", "추적검사 요망", "심화평가 권고", "지속관리 필요"로 판정함
- 도내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(8개 기관) : 창원5(CNA서울아동병원, 상남아이재활의학과의원, 창원아이정신건강의학과의원,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, 창원 경상대학교병원, 진주1(경상대학교 병원), 양산3(양산부산대학교병원, 양산서울요양병원, 서울패미리병원)
- 지원범위 :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(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)
- 지원금액 :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(최대 40만원)
- 지원절차
 - 지원대상 가정에 "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" 발급
 -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의료기관 이용 시 확인서 제출 후 검사, 별도로 원하는 의료기관 이용 시 정밀검사비 선 지급 후 보건소에 후 청구
- 지원기간 : 당해연도 지원 원칙(단, 34분기 수검자는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지원 가능)

☐ [참고] 영유아 건강검진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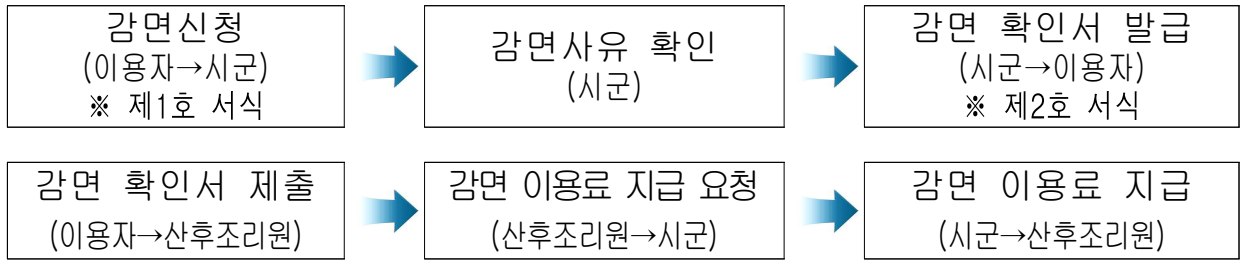
검진 항목	검진항목	목표질환	1차 검진 (생후14~35일)	2차 검진 (4~6개월)	3차 검진 (9~12월)	4차 검진 (18~24개월)	5차 검진 (30~36개월)	6차 검진 (42~48개월)	7차 검진 (54~60개월)	8차 검진 (66~71개월)
문진 및 진찰	시각 문진	시각이상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
	외안부시진	(사시)	●	●	●	●	●			●
	시력 검진	굴절이상 (약시)						●	●	●
	청각 문진	청각이상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
	귓속말검사	청각이상						●		
	예방접종확인	예방접종								●
신체 계측	키	성장이상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
	몸무게	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
	머리둘레	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
	체질량지수	비만					●	●	●	●
발달평가 및 상담	발달이상			●	●	●	●	●	●	
건강 교육 및 상담	안전사고예방	안전사고예방	●	●	●	●		●	●	●
	영양	영양결핍 (과잉)	●	●	●	●	●	●	●	●
	수면	영아돌연사 증후군	●	●						
	구강 문진	치아발육상 태			●					
	대소변가리 기	대소변가리 기				●	●			
	전자미디어 노출	전자미디어 노출		●		●			●	
	정서 및 사회성	사회성 발달			●		●			
	개인위생	개인위생				●				
취학 전 준비	취학 전 준비					●			●	
구강 검진	진찰 및 상담	치아우식증				●	●	●	●	
	치아검사									
	기타 검사 및 문진		※ 1차 검진(18~29개월), 2차 검진(42~53개월), 3차 검진(30~41개월), 4차 검진(54~65개월)							
	구강보건교육 (보호자 및 유아)		※ 기타 검사 및 문진 :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							

17.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

- 사업목적 :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여성 대상 산전관리 및 부인과 검진으로 출산친화 환경조성 기여
- 사업대상 : 3개 군(의령, 산청, 함양) ※ 국비 : 산청·함양, 도비 : 의령
- 사업내용 : 임신부 산전진찰 및 여성 부인과 검진·검사, 차량수리비
 - 이동진찰반(6명) : 의사, 간호사,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행정요원, 운전원
 - 진료시간 : 09시30분 ~ 12시/13시 ~ 14시30분
 - 진료일정 : 각 군별 월 3~5회 진료/연 180회(월 평균 15일)
 - 진료내역 : 산전진찰, 가임여성 임신 전·후 건강검진('13년~), 비가임 여성 건강검진('16년~), 배우자 건강검진('20년~) 등
 - 검진반 차량 및 장비 : 차량 2대(15.5톤 특장차, 카니발), PC노트북, 차량내 장착 의료장비 12종[혈압계, 신장체중계, 심전도기(EKG), 초음파 검진대(초음파 진단 위해 눕는 베드), 산부인과 검진대(전동), 흉부엑스선 촬영기, 유방암 촬영장치 DR, 골밀도측정기, 위상차현미경, 요비중측정기, 원심분리기]
- 시행주체 :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

18.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

- 사업대상 : 경남도내 취약계층 출산가정
- 사업내용 :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한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
- 감 면 료 : 이용요금의 70% (최대112만원)
- 감면절차



19. 산후조리비 지원(신규)

- 사업대상 : 도내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출산가정
- 사업내용 :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산후조리비 지원

□ 지원 기준

- 보건복지부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(2023년)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% 지원
 -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, 1회 지원 가능

※ 정부 기준가격의 초과분은 본인부담(제공기관이 5%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상품 운영가능)
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에 따른 유형별 차등지원
 -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)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화
- 최대 15일 이상 이용 시, 신청인에게 도비 지원이 없는 순수 본인부담금 발생
-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에 대한 예외지원 확대

20. 맘 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

□ 추진배경

- 정부에서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, 임산부가 서비스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거나 일일이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
-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

□ 주요내용

- (통합신청) 전국공통 서비스(엽산제 지원 등 15종)과 자치단체별 서비스(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~4종)를 통합안내하고 신청
 - (온라인) '정부24'에서 서비스 통합 안내·신청
 - (오프라인)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서비스 통합 안내·신청
- (구비서류 및 업무 절차 간소화) 기관간 시스템* 연계 강화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로 임신 정보 확인 절차 간소화 및 개별 서비스 처리부서와 담당자 연계

* 정부24, 서울, 행복e음, 건강보험공단, PHIS(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), e-post 등

(중전) 기관별 시스템 간 연계 미비 → (개선) 시스템 간 연계 강화로 실시간 정보 공유
 ※ 관련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 추진

< 맘편한 임신 업무 처리 흐름도 >



참 고

맘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현황(전국 공통 15종)

연번	서비스명	지원대상	지원내용
1	엽산제 지원	임신 전·후 3개월까지	엽산제 3개월분
2	철분제 지원	임신 후 16주차 이상	철분제 5개월분
3	맘편한 KTX	임산부(임신헌인부터 출산 예정일+1년까지)	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
4	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	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	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 산후관리 지원
5	에너지 바우처	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	동절기,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
6	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(다국어)	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법정대리인	임신 준비부터 자녀육아까지 유용한 정보가 수록된 수첩 배부 (영어, 중국어, 베트남어, 러시아어, 필리핀어, 캄보디아어, 일본어, 태국어)
7	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국민행복카드)	임신헌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	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 최대 60만원(국민행복카드)
8	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의료급여수급자)	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한 수급권자	임신·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60만원의 진료비 지원
9	청소년 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	임신헌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 만19세 이하의 산모	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 최대 120만원(국민행복카드)
10	SRT 임신부 할인	SR 회원 중 임산부(출산 후 1년 미만의 산모 포함)와 보호자(어른) 1명	어른 운임의 30% 할인
11	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(개별신청)	난임부부(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)	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
12	위기임신(마더세이프) 전문상담(개별신청)	전 국민(특히 예비 임신부 및 임산부)	약물, 화학물, 방사선, 알코올 노출 등에 대한 무료상담
13	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(안내)	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	입원치료비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% 지원
14	여성장애인 교육지원(안내)	여성 장애인 임산부	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및 상담 제공
15	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(안내)	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면서,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	휴가 및 급여 지원

21. 경남아이다누리카드 홍보사업

- 사업대상 : 도내 거주 막내가 만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, 협력가맹점
- 사업내용 : 다자녀가정 인식개선 캠페인, 경남 다자녀가정 초청 행사, 경남아이다누리카드 홍보
 - 추진체계 : 신용카드사 ↔ 다자녀가정(카드발급) ↔ 가맹점 이용
신용카드사 ↔ 도 및 시군 ↔ 참여기업(할인혜택)
- 시행주체 :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

22. 임신부 우대적금 지원

- 사업내용 : 기본금리 + 우대금리 1.5% 지원(도 0.75% + 농협 0.75%)
 및 출산용품 지원(농협 자체지원 24천원 상당)
 - 가입대상 : 거주지가 경남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
 - 가입기간 : 1년
 - 적립방식 : 자유적립식, 월50만원 한도

참고1 임신부 우대적금 상품 개요

구 분	주요내용
상 품 명	경남아이행복적금(NH농협), 아이든든적금(지역농협)
상품기간	1년(만기시 별도 청구 없이 자동 해지되어 가입자 명의 계좌로 입금)
적립방식	자유적립식 / 월 50만원 한도
우대사항	총금리: 4.6%, 이자: 150,099원(세전) (기본금리 + 우대금리 1.5%(도와 농협이 5:5 부담)) 출산용품 지원 : 24,000원 상당(농협 자체 부담) ※ 출산용품 지원은 10만원 이상 가입자(최종 잔액 120만원 이상)에 한함
가입조건	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(모자보건법 임신부 기준) 가입자가 아닌 자녀(태아) 수에 따라 상품 가입
가입장소	경남지역 소재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
가입서류	▶ 상품가입신청서(농협 점포별 비치) ▶ 임신부 확인서류(임산부 수첩, 임신확인서, 출생신고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
보조방식 (도 ⇒ 농협)	만기 해지 계좌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 정산 - 만기대상자 명단으로 농협이 청구하면 도가 지원금 송금 - 농협은 대상자별로 추가 이자를 송금 받은 당일 지급(이자발생 방지)
비 고	중도해지 시 우대금리 미적용